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정연욱·송언석·임이자

박상웅 • 박성훈 • 곽규택

김대식 · 서지영 · 엄태영

이성권 · 김선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'관광단지 제도'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㎡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 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(안제48조, 제52조 등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3항 중 "제54조제1항에"를 "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한다.

제5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가 지정한다.
-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,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·도지사"는 "시장·군수"로,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은 "시·도지사"로 본다.

제53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"로 한다.

제54조제1항 전단 중 "관광지등"을 "관광지등(제52조제7항에 따라 지

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시·도지사는 제1항에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시·도지사가 제1항에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3항까지에도"를 "제4항까지에도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또는 제2항에"로, "제5항에"를 "제6항에"로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을 받아야 한다.

제55조제2항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"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54조제4항"을 "제54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전단 중 "제54조제1항에"를 "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4조제1항에"를 "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"로, "제3항에"를 "제4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

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제5항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"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4조제1항에"를 "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"로, "제5항에"를 "제6항에"로,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54조제5항에"를 "제54조제6항에"로, "말한다"를 ",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를 말한다"로 한다.

제58조의2제1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도지사는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"으로 한다.

제60조 후단 중 ""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는 "시·도지사" 로, "실시계획"은 "조성계획"으로, "인가"는 "승인"으로, "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지구"는 "관광지등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"사업시행자"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은 "조성사업"으로, "국토교통부장관"은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, "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·군계획"은 "조성계획"으로 본다"를 ""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

사 또는 대도시 시장", "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" 및 "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"는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"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로, "제88조제3항"은 "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"으로, "인가"는 "승인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"는 "관광지등"으로, "실시계획" 및 "도시·군계획·광역도시·군계획"은 "조성계획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"의 시행자"는 "사업시행자"로 본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행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• ② (생 략) 개발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 -----제54조제1항 또는 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•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제2항에-----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 • 관 광단지 • 관광특구 • 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 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 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 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 ~ 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 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 <신 설>

제53조(조사·측량 실시) ① 시·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 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 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54조(조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제54조(조성계획의 수립 등)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・군 수 ·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 하여 시 · 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. 이를 변경(대통령령

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 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・ 군수가 지정한다.

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,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 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 우 "시·도지사"는 "시장·군 수"로,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은 "시·도지사"로 본다.

제53조(조사ㆍ측량 실시) 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(시장 ・군수의 경우에는 제52조제7 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 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광지등(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)-

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(이하"관광단지개발자"라 한다)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<u><신 설></u>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
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 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개 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을 받아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 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 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는 제1항 또는 제2항

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 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,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⑥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(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 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"사업시행

<u>"</u>
,
<u>④</u>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<u>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에</u>
<u>.</u>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⑥</u> <u>제4항까지에도</u>
⑦ 제1항 또는 제2항에
<u> </u>

자"라 한다)가 아닌 자로서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(이하 "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가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(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5조(조성계획의 시행) ① (생략)

②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 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.

제55조(조성계획의 시행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시·도지사 또는 시장
·군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
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
광단지로 한정한다)
 .

③ • ④ (생 략)

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 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(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 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56조(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)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·고시된 관 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 제2항 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 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 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 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

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
<u>제54조제5항</u>
<u>제54조제1항 또</u> 는 제2항에

도 또한 같다.

-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(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시대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1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·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제49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평가 결과 조성사업의 완료가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-
<u>利4</u>
<u>하에</u>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수(시장·군수의 경우에는 제5
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
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
서 같다)는 제54조제1항 또는
제2항에
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과 제2 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 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8조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
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각호의 인·허가 등에 관하여시·도지사가 인·허가 등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·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.

④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</u>
<u>수는</u>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<u>수는</u>
제58조(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
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
<u>제6항에</u>
<u>시·도지사 또는</u>
시장・군수(시장・군수의 경우
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
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)

- 1. ~ 23. (생략)
- ② 시·도지사(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를 말한다)는 제1항 각호의 인·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·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58조의2(준공검사) ① 사업시행 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<u>시·도지사</u>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<u>시·도지사는</u> 해당 준공검 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23. (현행과 같음)
②제54조제6항에
,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
정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시
<u>장·군수를 말한다</u>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의2(준공검사) ①
<u>시</u> ·도지사 또는
시장・군수(시장・군수의 경우
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
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)
<u>入</u> .

② (생략)

제60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준용) 조성계획 의 수립,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 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·제100조 •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 한다. 이 경우 "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"는 "시·도지 사"로, "실시계획"은 "조성계 획"으로, "인가"는 "승인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지구"는 "관광지등"으로, "도시 •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"사업시행자"로, "도시·군계획 시설사업"은 "조성사업"으로, "국토교통부장관"은 "문화체육 관광부장관"으로, "광역도시계 획 또는 도시・군계획"은 "조 성계획"으로 본다.

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는
② (현행과 같음)
제60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」의 준용)
<u>"</u> 국토교통부장관, 시·
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, "국
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
도시 시장" 및 "국토교통부장
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
수"는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
·군수"(시장·군수의 경우에
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
관광단지로 한정한다)로, "제88
조제3항"은 "제54조제1항 또는
제2항"으로, "인가"는 "승인"으
로, "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
시행지구"는 "관광지등"으로,

"실시계획" 및 "도시·군계획 ·광역도시·군계획"은 "조성 계획"으로, "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"은 "조성사업"으로, "도시 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"사업시행자"로 본다.